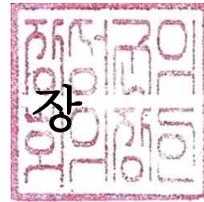


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·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 조정(안 제2조)
 -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으로 조정함.
-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 - 자치법규 제·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
 -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그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

○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(안 제6조 신설)

- 자문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 정리

4. 예고기간

○ 예고기간 : 2022. 12. 12. ~ 16.

○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조례안 예고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제출

○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다. 제출서식: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

조례 제정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

라.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”을 “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직무) 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 제정·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
2.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
3.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

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자문처리 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촉) <u>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자문사항)</p> <p><u>1.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위촉) ① ----- ----- -----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2인-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<u>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</u></p> <p>제3조(직무) 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<u>1. 자치법규 제정·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</u></p> <p><u>2.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,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</u></p> <p>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<u>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자문처리 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<u>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</u></p>

승 낙 서

본인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소 속

성 명

(인)

장성군의회회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 축 장

소 속

성 명

귀하를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. . . ~)

년 월 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